

공정거래위원회 반부패 · 청렴 시책 추진 우수사례

2025. 6.



공정거래위원회

대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상향식 간부평가 실시

1. 추진 배경 및 필요성

- MZ세대 공무원 증가 등 변화한 공직 환경에 발맞추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위 노조와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무보직 4급 이하 직원들이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상향식 간부평가 실시
 - 불합리한 조직문화의 개선 및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국·과장 등 관리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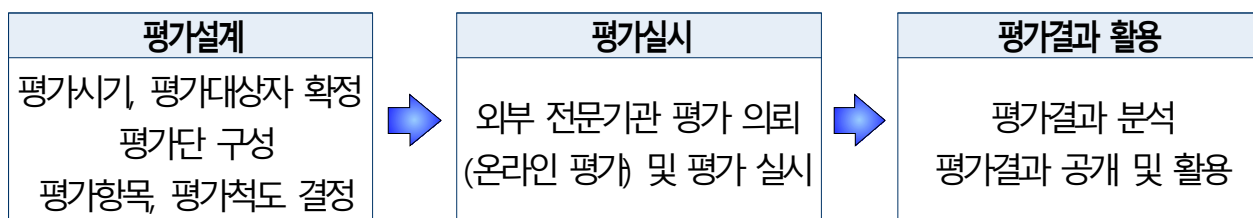
* "공정위, 간부평가 인사관리에 반영 노력...노조와 자율협약 (전자신문, '19.2.7)"

* "공정위 파격실험...'과장님 나빠요' 두번땀 승진누락 (중앙일보, '19.11.25)"

2. 주요 추진 내용

- (평가시기) 간부급 전보 및 성과평가가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연 1회 연말(11~12월)경 정기평가 실시
 - * 2018년~2019년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 및 위원회와 노조 간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로 시행 5년째를 맞이함
- (평가대상) 국장급 및 과장급 보직으로 근무한 간부
- (평가단) 평가대상자와 평가대상기간 동안 동일 실·국에서 근무한 무보직 4급 이하 전 직원(계약직 포함)
- (평가항목) 업무능력, 존중·배려, 리더십·동기부여, 책임감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5단계 척도로 평가

<운영절차>



3. 추진 과정 중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

□ 인기투표 방지

⇒ 인가·소문에 의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대상자와 대상 기간 중 업무 경험 있는 직원으로 평가단 구성

□ 평가자 정보 및 평가내용 노출 우려

⇒ 평가자 노출 우려로 평가를 포기하거나 실제와 달리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,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신뢰성·객관성 제고 및 익명성 보장 강화

□ 특이응답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객관성 약화 우려

⇒ 평가대상자별 상·하위 응답자 10%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 및 평균하여 조정점수 산정

4. 주요 추진 성과

□ (결과활용) 최상·하위 평정그룹을 게시판 공개 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 하고, 2회 연속 최상·하위 평정 그룹에 속한 간부는 적절한 조치

□ (개선효과) 외부기관에 위탁을 실시한 2021년 이래로 전체 평가대상자가 받은 평균점수가 꾸준히 상승

⇒ 정확하고 일관된 지시, 효율적 업무처리, 인격적 존중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 점수가 향상되어, 조직문화가 지속적으로 개선

5. 우수 사례 선정 이유

□ 불합리한 내부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조직 내부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

√ 해당 사례가 '22년도~'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'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'에 해당 여부	예 ☒	아니오 ☐
√ 과제 제출 년도 * ('24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	'22년 ☐	'23년 ☐
		'24년 ☒
√ '22년도~'24년도 미평가기관에 해당(자율과제 제출)	예 ☐	아니오 ☒

사건처리의 공정성 · 투명성 제고를 통한 조직 청렴도 개선

- (필요성) 공정위 핵심 업무인 공정거래 법령 위반 조사 · 심의와 관련, 공정성 · 투명성 강화 등 사건처리 개선 요구 대두
 - 청렴한 공정위라는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조사 · 심의 등 ‘법집행 시스템 개선’ 추진 필요
- (주요내용) ‘법집행 혁신 TF(단장: 사무처장)’ 구성, 사건처리 쏠 과정에 걸친 과제 심층 검토 및 내 · 외부 의견 반영을 통한 방안 마련
- (장애 및 극복) 제도개선 관련 예측가능성 ·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해 외부, 특히 법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의견 충실히 수렴 · 반영 필요
 - ⇒ 학계 ·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간담회 및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공개 토론회 등 수 차례 개최하여 의견 및 건의사항 적극 청취 · 반영
- (주요성과) 국민과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한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· 발표(’23.2월)

주요 개선사항
▶ (조사관행 개선) 조사공문 구체화, 자료제출 관련 이의제기절차 신설, 피조사기업 준법 지원부서 조사기준 마련 등 공정위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로 예측가능성 제고
▶ (절차적권리 강화)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, 중요 사건 2회 이상 심의 의무화 등으로 조사·심의 제도를 정비하여 절차적 권리를 강화
▶ (신속 피해구제) 장기·시효임박 사건 특별관리,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활성화를 통한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
▶ (사건기록 관리 고도화) 부서장 차원의 기록물 관리 강화, 기록물 편철 시스템 개선 등 기록물 관리 고도화를 통해 투명성 및 사건처리 역량 강화
▶ (조사역량 강화) 현장조사 기법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법집행 소단계별 교육프로그램 혁신을 통해 조사품질 향상

- (개선효과) 英 GCR은 공정위를 조사절차 권리 강화 등 이유로 매우 우수한 경쟁당국(Very Good, ★4.5개)으로 평가, 신속한 사건처리[평균 사건처리 기간 ’23년 221일 → ’24년 172일(약 22% 단축)], 공정위 조사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 제고 등
- (우수사례 사유) 내 · 외부 의견을 반영한 기관 고유업무 개선방안 마련으로 대국민 신뢰도 및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

✓ 해당 사례가 ’22년도~’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‘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’에 해당 여부	예 ☒	아니오 ☐
✓ 과제 제출 년도 * (’23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	’22년 ☐	’23년 ☒
✓ ’22년도~’24년도 미평가기관에 해당(자율과제 제출)	예 ☐	아니오 ☒